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46호  
2019년3월12일(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 1. 균형있는
- 1. 사람중심
- 1. 품격있는
- 1. 살기좋은
- 감상나눔
- 동생문화
- 시정주환
- 경제복지
- 관광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661호 도로지정(변경)공고(소호동 산103번지) /3
- 여수시 공고 제2019-676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 여수시 공고 제2019-68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19-687호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 폐지규정 발령 /29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도로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호동 산103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지정(변경)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여수시 소호동 980	28.5	8	21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 당초 여수시 공고 제2018-2357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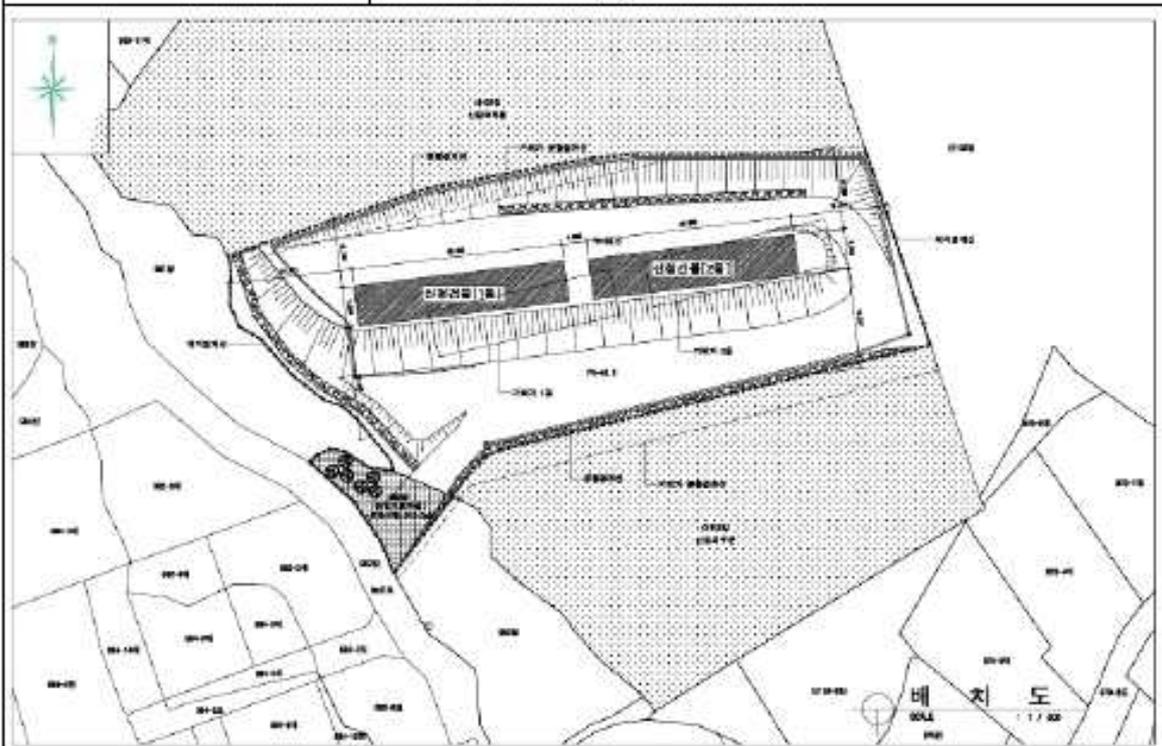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1.

여 수 시 장

# 위 치 도



# 공 고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3. 12.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우리시 인구 유출 방지 및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기존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으로 변경
- 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 전입,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및 결혼이민자 신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안 제3조, 안 제4조)
  - “전입세대”에서 “전입세대 등”으로 변경하여 세대편입, 세대합가, 동거인 등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
  -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 지원” 내용 추가로 인구 유입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에 지원 근거 마련
  - “결혼이민자”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배우자 등 지원 근거 마련

-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지원대상 사망의 경우 잔여 세대원 지원 내용 추가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 부칙 제2조 신설(적용례)
  - 2019. 1. 1. 전입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9. 3. 12. ~ 2019. 4. 1.(20일간)

###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인구일자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342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인구일자리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3427, 팩스 061)659-58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입지원 등의 인구증가시책”을 “여수시가 시행하는 인구시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구증가시책””을 ““인구시책””으로, “인구를”을 “인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입”이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5.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란 고용 근로자의 적극적인 전입활동을 통해 인구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을 말한다.
6.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세대 등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

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한한다)이 포함된 세대 또는 동거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학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해양경찰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4. 전입 우수 기관·기업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기업 중 매년 반기말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수가 규칙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5. 결혼이민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6.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4조의 제목“(지원사업)”을“(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으로,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을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거 시행 중인”을 “따라 지원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입 장려 시책 지원사업

가. 전입 세대 지원 : 전입지원금 지급

나. 전입 학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다. 해양경찰교육원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2.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 지원 사업 : 전입포상금 지급

3. 타 시·군·구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관·단체(기업체는 제외한다)의 정착지원 사업

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인구증가 시책”을 “인구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구증가시책”을 “인구시책”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4호”를 각각 “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관내로 전입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전입 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인 당시 진출한 경우도 포함) 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 등 지원 대상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환수금액은 그”로, “여수시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액”을 “지원액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수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9조제2항제3호 중 “인구증가시책”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인구증가 시책”을 각각 “인구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의”를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위원회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인구증가시책”을 “인구시책”으로, “기관·단체·기업체”를 “기관·기업”으로 한다.

제13조 중 “정하여 시행”을 “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19년 1월 1일 전입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u>전입지원 등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인구증가시책</u>"이란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u>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u>을 말한다.</p> <p>2. "<u>고등학교</u>"란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제3호의 <u>고등학교</u>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3. "<u>대학교</u>"란 「<u>고등교육법</u>」 제2조제1호의 <u>대학</u> 및 제2조</p>	<p><u>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여수시가 시행하는 인구시책</u> ----- -----.</p> <p>제2조(정의) ----- -----.</p> <p>1. "<u>인구시책</u>"----- <u>인구</u> ----- ----- --.</p> <p>2. "<u>전입</u>"이란 다른 시·군·구에 <u>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u></p> <p>3. "<u>고등학교</u>"란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u>고등학교</u>를 말한다.</p> <p>4. "<u>대학교</u>"란 「<u>고등교육법</u>」 제2조제1호의 <u>대학</u> 및 제2조</p>

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4. “기관·단체·기업체”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인으로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세대 :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한 세대
2. 전입학생 : 전입세대로서 관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3. 고등학교·대학교 : 전입학생

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삭 제>

5.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란 고용 근로자의 적극적인 전입 활동을 통해 인구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을 말한다.

6.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세대 등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한한다)이 포함된 세대 또는 동거

이 소속되어 있는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4. 기관·단체·기업체 :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5.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대상

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학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해양경찰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4. 전입 우수 기관·기업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기업 중 매년 반기말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수가 규칙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실거주 미전입 세대 주소이전 장려지원 사업

2.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3. 학생 후생복지 및 취업 협력 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 신고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6.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4조(지원내용)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 지원계획-----  
----- 범위에서 지원할 -----  
----- 따라 지원하고  
있는 -----  
-----.

1. 전입 장려 시책 지원사업  
가. 전입 세대 지원 : 전입지원금 지급

나. 전입 학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다. 해양경찰교육원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2.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 지원 사업 : 전입포상금 지급

3. 타 시·군·구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관·단체(기업체는 제

4. 타 시군구에서 여수시로 전입(이전)하는 기관·단체(기업체는 제외함)의 정착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 사업

6. 기타 시장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 4호의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 4호 사업에 의한 이전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여수시에 존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외한다)의 정착지원 사업

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삭 제>

5. ----- 인구시책 -----  
-----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  
----- 인구시책 -----  
-----  
범위-----.

② --- 제3호-----  
-----  
-----  
-----  
-----  
-----.

③ --- 제3호 -----  
-----  
-----  
-----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관내로 전입 후 6개

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해당 기관·단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여수시에 존치한 기간(이하, ‘존치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기간이 0~1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 전부

2. ~ 5. (생략)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심의·조정·자문·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월이 지났으나 전입 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인 당시 전출한 경우도 포함) 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 등 지원 대상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  
-----  
----- 환수금액은  
그 -----  
----- 시에 -----  
-----  
-----

1. -----  
-- 지원액의 -----  
-----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 소속 국·소·단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관내 대학교 교수 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4. 인구증가 시책 관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중에서 -----  
-----.

1. 시 -----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 인구 늘리기 시책 -----  
-----
4. 인구시책 -----  
-----
5. ----- 인구시책 -----  
-----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의 --. 다만,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  
-----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제12조(포상) ----- 인구시책 --  
-----  
기관·기업 -----  
-----  
-----.

제13조(시행규칙) -----  
-----  
----- 정-----  
-----.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여수시가 시행하는 인구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전입”이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4.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5.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란 고용 근로자의 적극적인 전입활동을 통해 인구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을 말한다.
6.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세대 등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한한다)이 포함된 세대 또는 동거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학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해양경찰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전입신고 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4. 전입 우수 기관·기업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가 시로 전입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기업 중 매년 반기말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수가 규칙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5. 결혼이민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 신고하여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6.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4조(지원내용)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 장려 시책 지원사업

가. 전입 세대 지원 : 전입지원금 지급

나. 전입 학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다. 해양경찰교육원생 지원 : 전입장려금 지급

2.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 지원 사업 : 전입포상금 지급

3. 타 시·군·구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관·단체(기업체는 제외한다)의 정착지원 사업

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인구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3호의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3호 사업에 의한 이전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여수시에 존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관내로 전입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전입 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인 당시 전출한 경우도 포함) 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 등 지원 대상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그 범위는 해당 기관·단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시에 존치한 기간(이하, ‘존치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기간이 0~1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전부
2. 존치기간이 1~3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70%
3. 존치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50%
4. 존치기간이 5~7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30%
5. 존치기간이 7~10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10%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소·단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내 대학교 교수 또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관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4. 인구시책 관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인구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기업 및 개인유공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19. 1. 1. 전입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충민사 앞 도로개설 공사
- 위 치 : 여수시 덕충동 1840-2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도로개설 L=85m, B=8.0m
- 사업 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기 간 : 2019. 3. ~ 2019. 12. 31.

### 2. 공람 장소 및 기간

- 기 간 : 2019. 3. 12. ~ 2019. 3. 26. (14일간)
- 장 소 : 여수시청 도로과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 기간내
-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4.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	덕충동	1693	대	1,479	5	*화산업 개발(주)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30-*			
2	"	1840-3	도	138	138	국	여수시			
3	"	1693-1	답	36	36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 양로 426-*			
4	"	1840-4	대	283	1	신승*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공원길 4* (덕충동)			
5	"	1840-5	답	190	4	이경*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공원길 43-* (덕충동)			
6	"	1693-2	답	55	55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 양로 426-*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7	"	1694	답	1,765	318	도충*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4동 60*호(문수그린아파트)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8	"	1694-1	답	331	21	도충*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4동 60*호(문수그린아파트)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9	"	1692-1	대	103	9	이재*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4길 * (공화동)			
10	"	1692-7	답	140	140	재단법인 국제*덕 협회	서울 동작구 흑석동 173-8*			
11	"	1692-4	중	679	12	재단법인 국제*덕 협회	서울 동작구 흑석동 173-8*			
12	"	1692-2	대	94	4	김혜*	순천시 가곡동 77*			
13	"	1692-5	답	9	9	조영*	1695-*			
14	"	126	도	6,566	37	국	국토교통부			
합 계					789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형식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덕충동	1840-4	감나무	R12*H3.5	1주	신승*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공원길 4*(덕충동)			
2	덕충동	1694	동백나무	R10*H2.5	15주	도충*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4동 60*호 (문수그린아파트)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분꽃나무	R10*H2.5	2주					
			사철나무	R10*H2.5	3주					
3	덕충동	1694-1	동백나무	R10*H2.5	10주	도충*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4동 60*호 (문수그린아파트)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대나무	R3*H2.5	2주					
			배롱나무	R5*H2.5	3주					
4	덕충동	1692-7	감나무	R12*H1.8	2주	재단법인 국재*덕 협회	서울 동작구 흑석동 173-8*			
			은목서	R24*H1.8	1주					
			후박나무	R17*H2.0	1주					
			복숭아나무	R15*H2.5	2주					
			먼나무	R15*H2.5	1주					
5	덕충동	1693-1	광나무	R10*H2.5	1주	이주*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26-*			
			종려	R15*H4.0	1주					
6	덕충동	1693-2	동백나무	R5*H2.0	5주	이주*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26-*	여수*려 새마을금고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	근저당권 지상권
			복숭아나무	R12*H2.5	1주					



# 의견서

사업명 : 충민사 앞 도로 개설공사

제 목		
수용토지위치		
사업자	전라남도 여수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3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19-687호

## 공 고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 폐지규정안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3월        12일

여 수 시 장    ㉸

##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 폐지규정안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